

가.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 **통신판매시 아래 방법으로 본인 인증**

(근거: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의2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)

- ①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
- ②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
- ③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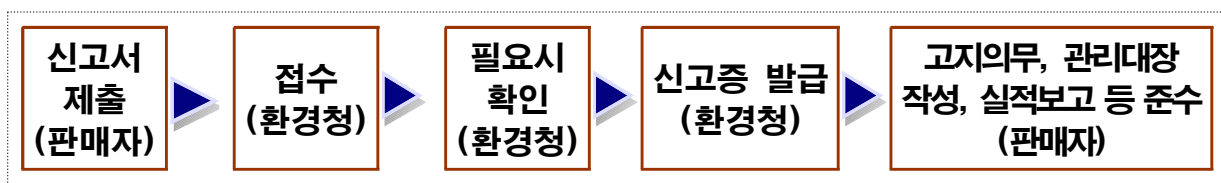
(위반시)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

나.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(근거: 법 제29조의3 및 시행규칙 제31조의3)

① 신고 대상

- 유독물질, 제한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자
(※ 금지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)

② 절차도



※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편리합니다.

③ 제출 서류(서식과 작성 예시는 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시)

- ▶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(별지 제47호의3서식)
- ▶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(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)
- ▶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(시설별 면적(m²) 및 용량(m³), 수량,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함)

(위반시) 판매업 미신고·거짓 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다.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자 준수사항

① 변경신고(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)

- 상호, 대표자,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
-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

② 화학물질 **관리대장 작성**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

- 구매자의 상호(성명), 사업자번호(생년월일), 주소, 구매용도 등 확인

③ 시약 **판매실적보고**(매년)

- (기한)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
- (방법) 실적보고 시스템*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

* 화관법민원24 ([https:// icis.me.go.kr](https://icis.me.go.kr)) <조사·보고 → 실적보고>

(위반시)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작성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처분

실적보고 미이행시 과태료 1,000만원 이하 처분

라.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(근거: 법 제29조의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)

① 고지 내용

- 시험용 · 연구용 · 검사용 **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**하여야 함
-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**취급기준을 준수**하여야 함

② 고지 방법

-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제공(전자문서 포함)

※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고지시에는 시약 정보 요약서 첨부(별지 제47호의2서식)

- 진열 · 보관하여 판매시에는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
- 통신판매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

(위반시)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